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현행 :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 개정 :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외에 개인 신용대출을 한 소상공인에게도 이차보전 지원

다.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이란”을 “이란 소상공인이”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

인에게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 제1호 이외의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 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이차보전 또는 특례보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

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u>“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u>
3. <u>“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 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u>	4. ----- ----- ----- ----- <u>시</u> ----- ----- ----- -----.
4. <u>“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 다.</u>	5. ----- <u>이란 소상공인이</u> ---- ----- -----.
5. <u>“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 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u>	<u><삭 제></u>

6. (생 략)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현행과 같음)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특례 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 제1호 이외의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의 지
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
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타 금융
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1. 지원 한도: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
다.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삭 제>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 또는 제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3. (생략)

4.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생략)

5조 및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

-----.

1. 이차보전 또는 특례보증-----

--

2.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3항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함에 따라 세출 발생(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위하여 시비 지원을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9년도를 1차년도로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구분	이차보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총 비용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민 간						
기 타						
합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경제기획국 일자리경제과 이미경(480-26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상세내역

- 대출규모 100억 기준으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분에 대하여 예산 추계
- 대출기간은 대출 시점 및 폐업 등을 감안하여 평균 일수로 계산
- $10,000,000,000 \text{ 원} \times 0.03 \times 240/365 = 197,260,273 \text{ 원}$

(대출 100억 규모 × 3% 이자 × 대출기간)

소관 실·과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회 식
	담 당	김 규 환
	담 당 자	이 미 경 (480-2632)